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1127
----------	------

제출년월일 : 2005. 9.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확산 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를 설치(제3조)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교육·홍보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함(제4조)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 함(제5조)
-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육성·관리,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적응과정에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 실시 등 차액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제14조)

- 시장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18조)

3. 근 거 법 령

-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7459호 : 2005. 3. 31 일부개정)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 2004. 3. 17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법률 7410호 : 2005. 3. 24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18802호 : 2005. 4. 27 일부개정)

4. 의 안 전 문 : 붙 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 부 : 1. 기타 참고자료(법령 등) 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 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수립,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진 및 판로대책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친환경농업 관련업무 및 학계 전문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자연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장은 위원이 사임,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보증) ①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 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생산기술의 보급) 시장은 토양 유용 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및 농업천적 등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라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토록 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며 친환경농업 경영체를 육성한다.

제12조(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통보

제13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 등 차액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지역별, 품목별, 단지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6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파급효과
5. 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

제18조(사업의 평가) ①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감소실적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친환경농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개정 2001.1.26>) ①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8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개정 2001.1.26>) 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6>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

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6, 2001.3.28>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개정 2001.1.26>)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개정 2001.1.26>)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개정 2001.1.26>) ①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개정 2001.1.26>)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1.1.26>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개정 2001.1.26>)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

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0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개정 2001.6.22>)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0호]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4.27 대통령령 18802호]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

원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2005. 7. 22 조례 제6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추진주체의 책무) ①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위촉직 위원정수 여성위원 30퍼센트이상 포함)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의회의원 1명, 친환경농업담당 국·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친환경농업 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친환경 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친환경농업 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①회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임,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
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3.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12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사업의 평가) ①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

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2004. 10. 8. 조례 제19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대상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대상 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농정·환경·축산관련 업무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농업관련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사업의 형태) ①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구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제12조(품질보증) ①군수는 칠원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생산기술의 발달) 토양미생물, 토착농법, 생물학적 순환,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라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관리, 경영체를 육성한다.

제14조(유통·보관·가공에 대한 지원) 관행 농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판매·수매를 통한 공급조절,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에 지원한다.

제15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평균 경작면적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를 실시한다.

제16조(토양보전)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개량
2. 농업용수오염방지 등

제17조(토양검정) ①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군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9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21조(사업의 평가) ①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
5.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 { 2001. 11. 01 조례 제1618호 }

개정 2004. 11. 01 조례 제1685호(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및조성지원특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법”이라 함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재배,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작물별 시비 기준량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지구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한다.
- ③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 농업 영농조합법인체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자연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개발과장, 농업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⑤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농업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시설관리)** ①시설의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군수는 운영주체의 시설의 유지·관리상태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경영이 우려될 때에는 군에서 직영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농업인 지원) ①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농경지(이하 “농지”라 한다)에서 친환경농법을 실천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또는 영농자재등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중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및조성지원특별조례에 의한 태권인 가족의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급금액의 일부를 당해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11.01 조례1685>

②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및 선도농가 농지라 함은 반딧불이가 다수 출현하는 지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3조(지원 기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법을 실천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1 조례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공고 제 2005 - 469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8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확산 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제3조)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교육·홍보 및 유기질 비료 등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함(제4조)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 함(제5조)
-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육성·관리,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보급, 토양보전을 위한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 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 적용과정에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제 실시 및 각종 보조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인정 함(제13조)
-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제14조)

- 시장은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 19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4040 FAX640-4047 E-mail : nuskn@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